## 숨쉬는 백년의 전통! 세계를 담을 영란인!



# 코로나19 예방 안내문

2021년 8월 17일

전주여자고등학교 보건실

**7** 710-5561

http://www.jjg.hs.kr

#### 1 전북 현황

2021. 8. 17.(화)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,143명 발생(2,819명 격리해제)하였습니다.

#### 2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체여행 [질병관리청]

○ 불가피한 여행은 근교로 짧게!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하게!

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



자주 손씻기



흐르는 물에

공용물품 자제하고 환기, 소독하기



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



거리두기 준수, 신체접촉 자제, **단체식사 지양**하기



전세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, 음식 먹지 않기



구호, 노래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하지 않기



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나 ☎1339로





### 변경된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지침 [질병관리청] 3

- **실내** 마스크, **항상 착용**해요!
- **실외** 마스크
- 예방접종자는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,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입니다.
- 실외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

(예방접종력 및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, 위반 시 과태료 부과)

-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·집회·공연(거리집회, 전시회, 연주회, 박람회, 지역축제 등)
- 실외 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, 동물원, 식물원 등)
- 실외 체육시설(야구장, 축구장, 경륜장, 경마장, 경정장 관람 시)
- 실외 쇼핑공간(전통시장, 실외 복합 쇼핑몰)
-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, 시설·장소 관리자·운영자 300만원 이하,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
  - \*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(예: 개장시기 해수욕장,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,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등)
-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.



